

## 소기업 건강보험 세액공제

이 새로운 세액공제 제도는 소기업과 소규모 면세 조직이 직원들의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저/중 소득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안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도 까지, 이 세액공제액은 소기업 고용주에게는 건강보험료의 35%까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면세고용주에게는 25%까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이후 부터는, 이 세액공제액은 소기업 고용주에게는 건강보험료의 50%로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면세고용주에게는 35%까지의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액공제 제도는 직원들의 독신자 보험 비용의 절반 이상을 지급하는 소규모 고용주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가 제공한 건강보험 - 비과세 금액으로 남아있음; 세금보고는 모든 고용주가 2011년도에 선택하여 보고할 수 있고 2012년도에는 소고 용주만 선택보고 할 수 있음

과세연도 2011부터는, 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용주가 고용인의 연간 양식 W-2에 고용주 후원 건강보험료를 보고해야 합니다.

고용주에게 급여 시스템이나 절차를 변경하는 데에 필요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연방국세청(IRS)에서는과세연도 2011부터 연방국세청 지침, IRS Notice 2010-69, 발행하여 신규 보고요건을 모든 고용인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2012년 1월에 발행하는 2011 연간 양식 W-2에 해당합니다. 연방국세청 지침, IRS Notice 2011-28에 의하여 고용인이 250미만일 경우의 소고용주는 2012년도에는 선택적으로 보고할 수 있으며 다음지시가 있을 때 까지 이고용인들에 대하여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침서 2011-28은 건강보험의 어떠한것을 포함할 수 있는지와 그 비용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양식 W-2은www.irs.gov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양식 W-2는 2012년 초에 많은 고용인들이 받을 양식 W-2과 같습니다. 이양식은 고용인들이 건강보험료를 고용주제공의 직장 건강보험플래어 래 보고할수 있는 코드를 포함 합니다. 개정된 양식 W-2는 모든 고용인에게 더낳은 소비자가 될 수 있는 건강보험혜택의 가격을 알려 줍니다. 이 보고되는 금액은 당시의 세금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고용주의 건강보험 혜택의 비용은 고용인의 세수입에서 계속 제외됩니다.

## 추가 정보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세무 조항에 관한 최신 정보를 보려면 www.irs.gov 로 방문 하십시오.

조인, 설명서, 질문과 답변, 비디오 등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www.irs.gov 사이트에 있는 Affordable Care Act of 2010: News Releases, Multimedia and Legal Guidance 페이지를 참고 하십시오. 연방국세청은 지속해서 건강보험 세금변화에 대하여 법률지침과 공적대화를 세액자를 위해 발행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최근의 소식을IRS.gov와 트위터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건강보험이나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최근의 소비자 정보를 HHS웹사이트, HealthCare.gov와 메디케어나 메디케어 변화정보를 Medicare.gov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용한 웹사이트:

[www.medicare.gov](http://www.medicare.gov)

[www.healthcare.gov](http://www.healthcare.gov)

## 무료 세금 보고 지원:

자원봉사자 소득세 지원 (VITA) 및 고령자 세무 상담 (TCE) 사이트는 저/중소득 계층을 위해 무료 세금 보고서 작성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처의 무료 세무 지원 상담소를 찾으려면 IRS 전화 1-800-906-9887번 또는 AARP TaxAide 1-888-227-7669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Publication 4894(KR) (Rev. 1-2012) Catalog Number 57796J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www.irs.gov

# 건강보험개혁법 (Affordable Health Care Act)



## 건강보험개혁법 조항 및 연방국세청 (IRS)

2010년 3월 23일에 대통령은 '환자 보호 및 건강보험개혁법'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 또는 줄여서 건강보험개혁법 (Affordable Care Act) - 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신규 법률은 2010년 3월 30일에 의료관리 및 교육 조정법 (Health Care and Education Reconciliation Act) 으로 개정되었고 미국의 의료관리 체계에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연방국세청(IRS)은 향후 수년 동안 효력을 발휘할 다양한 세법 조항 행정관리의 역할을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HHS)는 신규 법률에 따라 건강 보험 및 의료관리 정책을 관리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 여러분이 알아야 할 세법 변경 사항

건강 보험 개혁법 - ACA (Affordable Care Act)의 세법 조항은 거의 모든 개인과 고용주에게 적용됩니다. 후속 연도에 여러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인 자녀에 대한 건강보험

이제 27세 미만의 직원 자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일반적으로 고용인들에게는 면제입니다. 이 확장된 건강보험 세금 혜택은 다양한 직장과 은퇴자 건강 보험에 적용됩니다. 이 변경내용에 따라 카페테리아 계획(cafeteria plan - 종업원이 면세 혜택 옵션 및 현금 또는 과세 혜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계획)을 보유한 고용주는 즉시 종업원으로 하여금 이 확장된 혜택을 받기 위해 면세 기여금 납부를 시작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연방 소득세 보고서상 자영업자 건강보험 감면 자격이 있는 개인 자영업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 저혜택 지역에 근무하는 의료 전문가에 대한 세제혜택 확장

2009년 이후 주의 저혜택 지역 근무자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으로 학생 대출 경감을 받았던 의료 전문가는 앞으로 연간 세액 삭감 혜택을 받을 자격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저혜택 지역에서 근무한 대가로 학생 대출 탕감을 받은 의료 전문가라면, 탕감 받은 부채 부분에 대하여 세금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탕감 부채액은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이었습니다. 각 주의 대출 프로그램 담당관에게 문의하여 신규 법률이 당신에게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하십시오. 귀하가 이미 2009년도와 2010년도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였다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연방 소득세 수정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건강저축구좌 (HSA)의 변경

2011년 1월 1일부터는 진통제처럼,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값은 처방이 있을 경우 건강저축프로그램으로 의료비 상환 제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건강저축프로그램으로 처방전없는 약을 구입하실 경우에는 처방전이 있으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 건강저축프로그램은 건강 저축 구좌 (HSA) 및 Archer 의료 저축 구좌 (Archer Medical Savings Account), 신축성 지출 구좌 (Flexible Spending Arrangements), 건강 환불 구좌 (Health Reimbursement Arrangements).

이 변경내용은 처방전 없이 구입하더라도 인슐린 약을 구입시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또 의료 장치, 안경, 콘택트 렌즈, 공동부담금 및 자기부담금 등 여타 의료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IRS Announcement 2011-14에 따르면 브레스트 웹프와 같은 의료 장치나 모유를 도우기 위한 다른 기구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하십시오. 즉FSA, HSA and HRA와 같은 구좌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만약에 건강저축구좌 (HSA) 및 Archer 의료 저축 구좌 (Archer Medical Savings Account)에서 처방전없이 사는 약이나 처방전이 필요한 약을 처방전 없이 구입할 경우, 그금액은 당신의 전 세수입에 포함되며 20%의 부가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저축구좌 (HSA)의 결산과 세금보고는 양식 8859를 사용하시며 Archer 의료 저축 구좌의 결산과 세금보고는 양식 8853를 사용하십시오. 이양식서류들을 작성하신 후에 2011년 연방세금보고를 2012년도에 하실때 양식 1040에 첨부하여 보고하십시오. 건강저축구좌 (HSA) 및 Archer 의료 저축 구좌 (Archer Medical Savings Account)의 지출액은 세금수입에 포함되지 않으며 당신의W-2 양식작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실내 태닝 서비스에 대한 소비세

이 소비세는 2010년 6월 30일 이후부터 실내 태닝 서비스에 부과 적용 하게 되었습니다. 실내 UV 태닝 (tanning) 서비스에 대하여 10%의 소비세를 부과합니다. 실내 태닝 서비스는 현대 이상의 UV 램프를 사용하는 전자제품을 사용한 서비스를 지칭하며 200에서 400 나노미터 사이의 자외선을 사용하여 빛에 살이 노출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세금은 면허를 소지한 의료 전문가가 (피부과 전문의, 정신과 의사, 간호사) 자신의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광선요법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별도 수수료 부과 없이 회원들에게 부가 서비스로서 태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피트니스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가 적용됩니다.

실내 태닝 서비스로 수입이 있을 경우 제공자는 연방국세청 (IRS) 양식(Form) 720 '분기별 연방 소비세 보고서'에 따라 수입이 있는 분기별로 정부에 세금을 납부합니다. 만약에 서비스제공자가 세금을 받지않았다면 제공자 자신이 이세금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 입양 세액공제 확대 - 2011 과세연도

만약에 당신이 입양을 했거나 하려고 시도하였다면 그에 관련된 지출에 관하여 입양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입양 세액공제 금액은 2011년도에13,360 달러입니다. 국내입양일 경우, 당신은 그 입양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아 입양일 경우, 당신은 그 입양에 관련된 액수가 소액이거나 없어도, 그 공제 혜택의 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 세금보고시, 당신의 조정된 총수입(MAGI)이 \$185,210이나 그 이상일 경우에는, 이 입양공제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조정된 총수입(MAGI)이 \$225,210 이상일 경우에는, 이 입양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개혁법 (Affordable Care Act)은 또한 이 세액공제를 환급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유자 격 납세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환급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입양세액공제는 입양 수수료, 법원 소요비용, 변호사 비용, 및 여행경비를 포함한 법적 입양과 관련된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소득 한도와 다른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혜택을 받으실수 있다면, 해당 납세자는 양식 8839 '적격 입양 비용'을 작성하고, 아울러 2011년도 세금 보고서에 한 부 이상의 입양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양식 8839 지침을 참조 하십시오.

납세자들이 적절한 세액공제 청구를 보장하도록 고안된 이 문서 요건이 명시하는 것은 세액공제 청구 납세자는 지면 서류로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필수 문서가 첨부된 정확한 지면 보고서에 기재된 환급액을 받는 데에 6~8주가 소요됩니다. 연방국세청(IRS)에서는 납세자들에게 신속한 환급을 받기 위해 직접 입금 방식을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세액공제를 청구하는 납세자는 여전히 보고서를 위해 IRS 무료 신고를 사용할 수 있지만, 보고서를 인쇄하여 모든 필요 문서와 함께 IRS로 발송해야 합니다